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1가합565739(본소), 2021가합592298(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 양수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암

담당변호사 서영민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피고1. C

2. D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온

담당변호사 김소명, 조지운

변론 종결2022. 12. 8.

판결 선고2023. 2. 14.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21.부터 2021. 12. 2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5.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피고 C, D은 각자 위 1.항 기재 금원 중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는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생활용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E'라는 의약외품 세트(LED 칫솔, 치약 세트, 이하 '이 사건 사업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생산, 유통하는 회사이다.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주주이다.

나. 원고는 2021. 3. 9.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업목적물과 관련한 유, 무형의 재산 전부를 1,000,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200,000,000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였다.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서

본 영업 및 자산 양수도계약(이하 "본 계약")은 2021년 3월 9.일 아래 당사자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1. 양도인("갑"): 피고 회사
2. 양수인("을"): 원고
3. 이해관계인("병"): 피고 C, D

본 계약은 피고 회사를 영업양도인, 원고를 영업양수인, 그리고 피고 회사의 주주인 피고 C, D을 이해관계인으로 하여 피고 회사가 영위하는 E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영업 및 자산의 양수도를 목적으로 아래 내용과 같이 체결되었다.

제2조(양도 목적물의 대상과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E 사업관련 영업 및 자산양수도 대상은 별첨 자산리스트에 기재된 바를 그 목적물로 한다. 단, 그 범위는 목록에 기재된 것에 한하지 아니하며 E 사업에 제공된 유, 무형의 재산 전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자산리스트 별첨)

제3조(양수도대금의 평가와 확정)

1. 본 계약의 양수도 대금은 양수도 기준일 2021년 3월 9.일 현재의 평가금액 금 일십억원(₩1,000,000,000)(부가세별도)으로 한다.
2. 원고는 위 제1항의 양수도대금을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에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본 계약일 이후 피고 회사와 원고의 공동실사를 통하여 위 자산목록 중의 자산이 멸실되거나 현저히 훼손된 것이 발견될 경우 그 자산의 평가액을 위 제1항의 양수도대금에서 차감하기로 한다.

제4조(양도의 이행)

피고 회사는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체없이 제2조의 자산리스트 목록에 기재된 목적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거나 명도하여야 하며 아울러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원고에게 즉시 교부하기로 한다.

제5조(대금의 지급방법)

원고는 아래 제6조의 주주 전원의 동의서를 수령하는 즉시 계약금 금

이억원(₩200,000,000)(부가세 별도)을 지급하며, 계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 나머지 잔금 금 팔억원(₩800,000,000)(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경업금지 및 협력의무)

1. 피고 회사 및 피고 회사의 임원과 피고 C, D은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없이 양도하는 영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행위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간 하지 않기로 한다.
2. 피고 회사는 기존의 유·무형의 거래처 및 E 사업의 영위에 필요한 협력업체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를 제공하고, 본 계약체결 이후 원고가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정상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본 계약체결 이후 즉시 사업을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행정적인 절차 등을 책임지고 이행하도록 한다.

제10조(손해배상 등)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제2조 목록상에 기재된 영업과 관련된 미확인 채무 및 장래 우발채무가 발생할 경우 피고 회사와 피고 C, D은 연대하여 본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원고를 해당 위험에서 해방시키기로 한다.
2.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양수도 대상 영업권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유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 회사 및 피고 C, D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2조(계약해지 등)

1. 양수도 전일까지 발생한 민, 형사상 문제는 피고 회사 및 피고 C, D이 책임지기로 한다.
2. 계약금 입금 후 피고 회사의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금의 3배를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한다.

※ 첨부서류

1. 자산리스트
2. 주주 전원 동의서 or 주주총회 의사록(개인 인감도장 날인 / 개인인감증명서 첨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별첨

E 자산 리스트

1. E 상표권(국문, 영어)
2. E 자사물 (인터넷주소 1 생략)
3. F, G, H 금형포함 부자재관련 원본 일체
4. E 시즌 2 목업 및 사업화 전 관련 자료 - 금형 디자인 포함
5. 거래처리스트

다. 원고는 2021. 4. 20. 피고 회사에게,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에도 자사물 및 다른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여전히 이 사건 사업목적물을 판매하였고, 원고로부터 여러 차례 이에 관한 중지 및 해결 요청을 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고 한다)하면서 계약금 200,000,000원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본소청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30일째 되는 날까지 이 사건 사업목적물의 양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3. 30.경 원고에게 고지조차 하지 아니하고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이 사건 사업목적물 및 그에 부속되는 권리들이 피고 회사에게 완전히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게 이를 완전하게 이전할 수도 없었다. 아울러 피고 회사는 경업금지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피고 회사의 자사물 내지 다른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계속하여 이 사건 사업목적물을 판매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 회사는 그 귀책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해제권을 이 사건 해제통보를 통해 행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12조 제2항에서 규정한 60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 × 3배) 상당의 약정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 D은 각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600,000,000원 중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 중 일부인 200,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해제통보시까지 채무내용에 좋은 이행제공을 충실히 하였으나, 원고가 2021. 4. 20.경 돌연 피고 회사에게 일방적으로 이 사건 해제통보를 하면서 피고 회사의 이행제공을 수령거절하였다.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약정해제권을 정한 규정은 따로 없으므로 원고는 오로지 민법상 법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 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채무내용에 좋은 이행제공을 수령거절하여 민법 제400조에 따른 채권자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이행지체에 따른 책임을 면하게 되는바,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해제통보는 그 해제권 발생 내지 행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현재까지 해제되지 않은 채 유효하게 존속하고,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3조 제2항, 제5조에 따라 잔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일인 2021. 3. 9.부터 30일이 경과한 날 다음날인 2021.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드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그 귀책으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는 등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해제통보는 부적법하여 효력이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 회사는 2021. 4. 5.경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사업목적물에 관한 상표를 이전등록하였고, 그 무렵 I 및 자사물의 사업자 정보도 원고 명의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거래처 리스트를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제공하였고, 2021. 4. 16.경 업데이트된 거래처리스트 파일을 제공하였으며, 2021. 4. 14.경에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업목적물 관련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피고 회사의 J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를 공유해주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 별첨된 양도대상 리스트 1 내지 5항 중 1, 2, 5항의 이행제공을 대부분 완료하였다.

나. 나아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시부터 여러 차례 소통을 하면서 이 사건 사업목적물 재고 6,000개와 금형 및 이와 관련한 자료 일체의 실사, 제공 일정을 논의하였고, 2021. 4. 16. 최종적으로 그 다음주 화요일인 2021. 4. 20.로 위 실사 및 제품 제공 일정을 조율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21. 4. 20.경까지 위 재고, 금형 등의 이행제공을 위한 준비를 마쳐두었다. 그런데 원고는 이와 같이 2021. 4. 16.까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이행 관련 사항을 논의하다가 2021. 4. 19. 피고 회사에게 '인수인계 부족, 지연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목적물을 인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뒤 2021. 4. 20. 이 사건 해제통보를 하기에 이르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제통보일인 2021. 4. 20.까지 이 사건 사업목적물 재고, 금형 및 그 자료 일체를 원고에게 실제 제공하지 않았던 것은 원고와의 협의 및 조율에 따른 것으로서 이를 두고 피고 회사가 그 의무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4조에서는 피고 회사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지체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만 있을 뿐 그 이행기를 구체적으로 정한 규정은 없고, 그 제3조 제2항, 제5조에서 원고의 양수도대금 잔금지급기일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고 회사 의무의 이행기도 위 영업일 기준 30일 이내라고 볼 수는 있을 것이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인 2021. 3. 9.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은 이 사건 해제통보일인 2021. 4. 20.인바(원고는 영업일에 토, 일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 이와 같은 점에서도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제통보시까지 이 사건 사업목적물의 재고, 금형 등을 실제 원고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행지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인 2021. 4. 9.경에도 피고 회사 명의로 생산된 이 사건 사업 목적물이 각종 온,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위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원고의 요청에 지속적으로 협조해온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이 사건 해제통보일인 2021. 4. 20.경에 이르러서는 K를 제외한 나머지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피고 회사가

생산한 이 사건 사업목적물의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 회사의 경업금지의무는 그 성격상 원고의 잔금지급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원고가 2021. 4. 20. 이 사건 해제통보로 피고 회사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한 이상 피고 회사도 그 때부터 원고로부터 다시 잔금지급에 관한 이행제공을 받을 때까지는 위 경업금지의무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고 봄이 형평에 부합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의 위 주장사실만으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경업금지의무를 본질적으로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업목적물 및 그와 관련된 권리들이 애당초 피고 회사에게 완전히 귀속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고, 피고 회사가 2021. 3. 30.경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를 이전하였더라도 그것이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며, 달리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채무불이행 내지 원고의 해제권 발생 사유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피고 회사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해제통보는 효력이 없고, 달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잔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제통보일 다음날인 2021. 4. 21.부터1)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석근

판사류의준

판사이덕균

1) 피고 회사는 2021.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원고도 이 사건 해제통보로 이행(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그 잔금지급의무에 관하여 피고 회사의 의무 이행까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항변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의 이 사건 해제통보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의 이행제공을 회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해제통보일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3조 제2항, 제5조에 따른 잔금 지급기일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체결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30일이 경과한 날인 2021. 4. 20.이다. 따라서 원고의 2021. 4. 10.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